

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13.03.01.

□ 개정 : 2017.03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정원 외 외국인 출신자를 대상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신(편)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전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 제 3조에서 정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자격)

① (신입학) 일반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

1. 교육과정졸업외국인 모집전형의 경우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

2. 교육과정이수외국인 모집전형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

3. 전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모집전형의 경우 외국인 학생으로서 12년 이상의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4. 한국어 능력(TOPIK)이 3급이상에 해당하는 자

5. TOPIK 3급 이상이 없을 경우, 국내·외 대학 한국어 과정 3급 수료자 또는 본교 국제협력처에서 3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(편입학) 본 대학교 외국인 신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고서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1. 2학년 외국인 모집 전형의 경우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정 1년 이상 이수자

2. 3학년 외국인 모집전형의 경우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2년 이상 이수자 및 전문대학과정 졸업(예정)자

제4조(입학) 입학은 이 세칙에서 정한 전형에 의하여 합격한 자로서 총장이 그 입학을 허락한 자로 한다.

제5조(입학시험과 시기)

① 입학전형 서류심사 및 학업계획서와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는 입학전형 시기에(전기, 후기) 실시한다.

② 입학시험은 입학전형시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자에 따라 학생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서류) 본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①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

② 자기소개서/지원신청서

③ 외국대학 및 고등학교의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.

- ④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(해당자)
- ⑤ 학생 부·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증명서 각1부.
- ⑥ 학생 부·모의 외국인 등록증(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함) 각1부.
- ⑦ 재정지원확인서(은행발행-예금잔고증명)
- ⑧ 사진(크기 3×4cm) 3부

제7조(전형방법) 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8조(장학금) 신·편입학 사정원칙에 따라 지급한다.

제9조(예외규정)

- ① 본 규정 제3조1항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입학 전 별도의 어학강좌를 수료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(편)입생 모집요강과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0조(등록금 납부)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교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 본교에서 지시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입학허가 취소) 정원 외 입학에 필요한 구비조건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